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고령군



-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6. 22. ~ 2026. 7. 6. (15일간)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제101조제4항제1호
- 공고대상 : 4개소

업종	인허가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일반음식점	20230826073	호텔그린빌리지 교육문화회관	손○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638, 호텔그린빌리지 1층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유형주점영업	19990568043	퀵가요주점	손○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638	
일반음식점	19870568003	별빛포차	김○선	고령군 대가야읍 우록로 6	
일반음식점	20190572010	만남횃집	장○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3길 29, 마동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식품진흥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 의 :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식품진흥팀(☎ 054-950-6693)